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8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대학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업료등 보조금”을 “수업료등”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서식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앞 쪽 서식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앞 쪽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앞 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식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같은 서식 유의사항 제3호 중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행번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련사항	대상구분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보훈번호	등록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제출처 (학교명)			

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위 학생에게 휴학·퇴학·정학 등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학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목적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면학정신 함양		
사업내용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등 면제		
필요경비	필요경비 총액	청구 금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송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대학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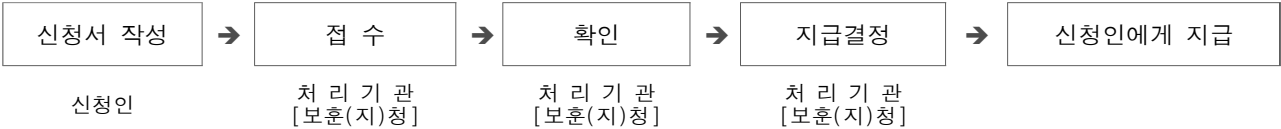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2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교육기관명 :

보훈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성별)	학과	학년	평균 성적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	신청 학점	수업료 등 금액			청구금액 (수업료등 금액의 반액)	비고
								입학금	수업료	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과정 등) 및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자는 복학 시점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인적사항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 유공자와 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 (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직전 학기 성 적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보조액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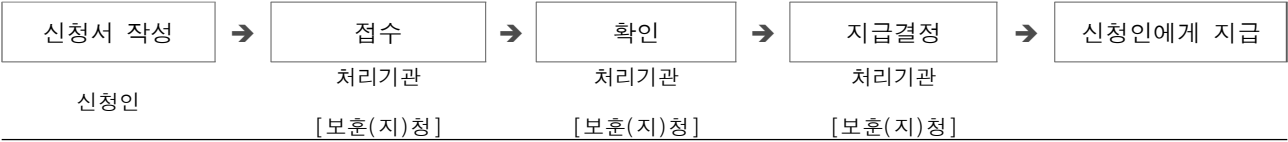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학교명

수 신 00지방보훈청장, 00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유)

제 목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래 학생에 대한 취학 사항 변동 내용을 통보합니다.

인적사항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년 · 학과(반)
변동사항	변동 연월일	변동 내용		
		[]퇴학 []정학 []휴학 []복학 []사망 []기타		
변동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유의사항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해당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추천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관할 보훈(지)청				5·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주소		-				
최종 학력	학교				전공(부전공)		졸업성적
	[]졸업(예정) []중퇴 []휴학 []수료 []검정고시 []독학사						/
직업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필 []미필 []면제
			~		복무기간		년 월
자격·면허	1	운전면허[]종, []대형 []보통		2			
	3			4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점수
			[]상 []중 []하				
			[]상 []중 []하				
주요 경력	취업처	직위	담당직렬		재직기간		퇴직사유
					년 월		
					년 월		
취업 희망 조건	순위	희망직렬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1						
	2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질병 등 건강상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첨부서류	이력서 1부	수수료 : 없음
-------------	--------	----------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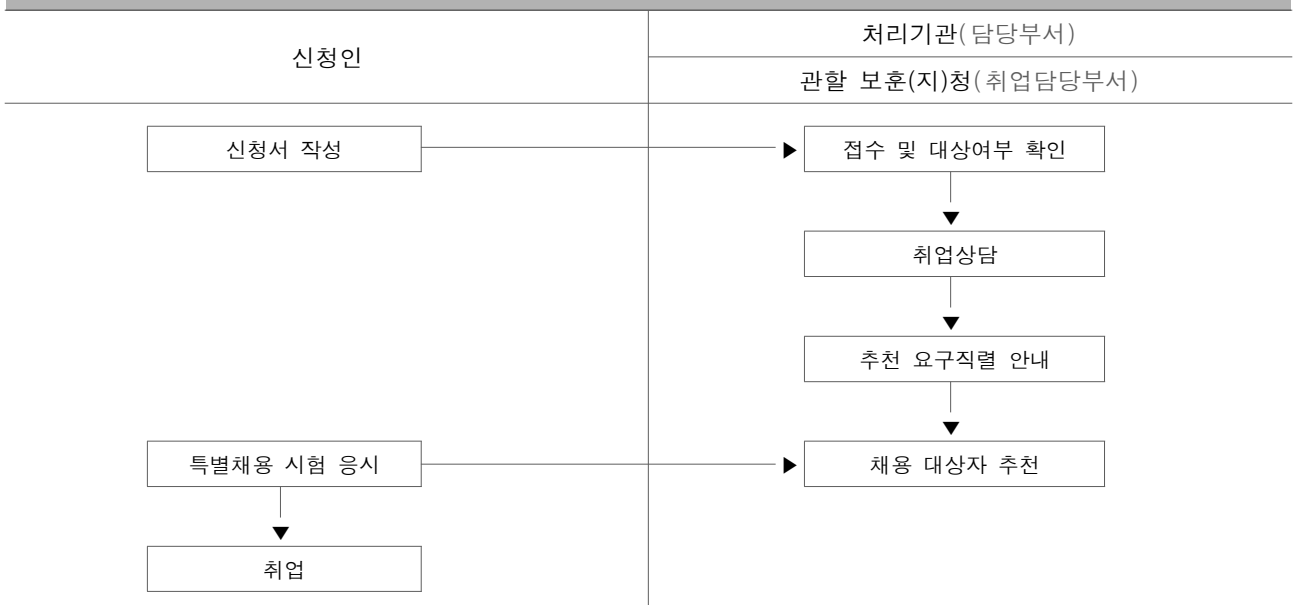
취업지원 대상여부 확인 (*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대상여부	[]대상	취업인원	보훈특별고용(명), 특별채용(명), 가점(명)	취업횟수	회
	[]비대상				

취업 추진사항

연번	연월일	직렬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처리절차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 하오니 1개월 이내에 귀 업체 등에서 고용해야 할 사람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추천자 중 고용해야 할 인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추천 대상자 명단	보훈번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면허
	전공	고용 직종
불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 1부 ※ 유의사항 1.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한 경우를 포함)에는 추천자 중에서 고용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3.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선정 대상자가 없거나 그 인원이 고용 의무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뒤쪽)

추천대상자 명단

보훈 번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면허	전공	직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u>보조금 지급신청서 등</u>)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u>보조금 지급신청서</u>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u>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등</u>) ----- <u>대학수업료 등 지급 신청서</u> ----- ----- ----- ----- ----- -----.
제10조의3(<u>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u>)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u>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u> 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3(<u>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지급 신청서</u>) ----- ----- --- <u>수업료등</u> ----- ----- -----.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u>일반직공무원등</u>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 <u>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u> ----- ----- -----. ----- -----. ② (현행과 같음)